

- 도시계획시설 지정토지 해제에 대한 청원 -

청원소개 의견서

청원소개 의견서

존경하는 환경환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전인철 의원입니다.

본 청원건에 대하여 소개의원으로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내 구미시 광평동 221번지의 86필지의 토지(국공유지 포함한 연면적 : 51,588평중 약 27,000평)는 원래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 이었습니다.

그런데 구미시에서 1978년도에 이 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종합운동장 용도로, 도시계획시설 지구 지정을 한 후

26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어떠한 도시계획시설도 집행하지 않은 채, 토지소유자인 청원인 이성수외 59인들의 사유재산을 규제하여 왔습니다.

이로 인하여 청원인들은 지금까지 주변지역대비 사유 재산 사용의 침해 및 경제적 손실을 물론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 왔습니다.

따라서 청원인들은 그동안 수많은 민원을 계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는 내용으로는,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시설 지정후 10년 이상 장기 미 집행 된 시설에 대해 보상규정이 없는 규제는 과도한 재산권침해” 라면서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청원인들은 그 동안 규제되어 왔던 청원인들의 토지에 대하여는 구미 도시계획시설 재정비시, 26년간 도시계획시설지구로 묶여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한 토지를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여 줄 것을 관계기관을 통해 많은 민원을 접수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청원인(토지소유자)들의 고충사항 및 민원사항은 지금까지 시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광평동 지역구 출신의 전 시의원들(나명온 의원 등)이, 시정 질의를 한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2000. 8월경에는 청원인(토지소유자)들이 청와대 민원 비서실에 민원신청서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는 국민고충처리 신청서를, 그리고 구미시장에게는 진정서를 접수하여

그간의 고충사항 및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요청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 요청 건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민원회신 내용으로,

청와대 민원비서실에 제출한 민원에 대해서는, 2000. 9. 5일경 경상북도에서 민원서류 회신을 보내왔는데 “토지소유자들이 재산권행사에 제약이 있고, 주변지역이 개발된 점을 감안하여 구미시장으로 하여금,

조속히 보상을 하여 운동장을 설치하던지, 아니면 장기미집행시설로서 운동장 설치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시계획에 반영토록 통보하였다” 고 했습니다.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접수민원건에 대해서는
2000. 10. 23일경 고충민원처리결과를 알려 오면서,
(1) “구미시시장의 입장은 구미 도시계획 재정비시 민원 해소 차원에서 장기 미집행 시설의 존치 여부를 검토 하겠다” 고 통보하여 왔다고 했으며,
(2) 그리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종합하여 심의 판단 한 결과로, 도시계획의 해제여부를 당해 도시계획 입안권자가 도시계획의 결정취지, 목적, 기능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라며,

도시계획에 대하여는 그 존폐여부를 2001. 12. 31까지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계획에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 입안권자인 구미시에 향후 도시 계획 재정비시 신청인들의 고충민원에 대하여도 적극 검토토록 당부하였다” 고 알려 왔다고 했습니다.

구미시에 접수한 진정서건의

2000. 8. 29일자 회시내용으로는,

구미시 재정 형편상 민원 해소차원에서 사업지구 우선
순위에 따라 년차적으로 매입하고 있으며,

도시계획 재정비시 장기 미집행 시설의 존치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 고 통보해온바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구미시의 도시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은, 그동안 도시계획시설 지정후 10년이상 장기 미집행된
관계로 과도한 재산권 침해를 받아온

청원인(토지소유자)들의 토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해제하지 않으므로써, 청원인들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견해로는,

첫째, 예산을 고려한 측면에서 구미시가 청원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지금까지 도시계획시설로 종합운동장
부지로 지정을 해두었지만,

이미 청원인들의 토지와 인접한 주변일대에 구미시 종합운동장 및 실내체육관이 건립된 상태이며, 향후 어떠한 부속시설의 추가 건립계획이 있다하더라도

굳이 구미시에서 청원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일반주거지역의 비싼 토지를 매입하여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부속시설을 갖추어야 하는지, 그 당위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컨데, 인접한 박정희 실내체육관 건립부지의 토지보상을 예로 든다면, 그 당시인 1997년경 평균 평당 70만원을 보상하고 수용하여 시설한바 있습니다.

청원인들의 소유토지도 그 동안 지가상승 등을 고려한다면, 평당 100만원을 적용할 경우 토지 보상가 만도 무려 약 270억원 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바,

본 의원의 의견으로는, 향후 굳이 종합운동장 부지가 추가로 필요하다면, 현재 구미시 종합운동장 주변에 있는 자연녹지 또는 공원부지를 활용하여도 얼마든지 대체시설을 갖출 수 있고, 예산을 절감 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교통문제 측면에서 본다면,
특정지구에 운동장이 밀집해서 조성된다고 가정 했을 때,
현재상태의 종합운동 규모의 시설로 행사가 있을시에도
진입도로가 정체되어 주변도로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운동장과 관련된 부속시설을 추가로 건립할
경우에는 전국체전등 대규모 체육행사시 운동장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교통문제는 더욱더 악화될 것은 자명한 사실로 이를 개
선하기 위해서도 수많은 사람이 운집하는 대규모의 체육
시설은 분산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민원해결 측면에서 본다면,
26년 동안이나 청원인들이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구미시의 도시계
획시설 미 집행에 따른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헌법재판소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시설 지정 후 10년이상 장기미집행된 시설에 대해 보상규정이 없는 규제는 과도한 재산권 침해” 라면서 위헌 이라는 판결을 감안하고,

청와대 민원비서실을 대신한 경상북도의 민원 회시 내용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접수민원 처리결과와

구미시에 접수한 진정서 회시 내용을 종합하더라도 장기미집행시설의 존치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청원인들의 청원취지인 구미시 광평동 221번지 외 59필지의 토지를 수용 보상해주던지, 만약 도시계획시설인 야구장, 정구장, 배구장 용도로 빠른 시일 내 건립할 수 없다면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시설 지정후 10년이상 장기미집행된 시설에 대해 보상규정이 없는 규제는 과도한 재산권침해” 라면서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근거에 의거 1978년도에 계획한 도시계획시설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그에 해당되는 광평동 221번지 외 59필지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청원취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